

<2025 대비 객관식 관세법개론 정오표>

쪽	문제	내용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44	11번	보기	② 당해 제조·수리공장에 투입되는 작업설비	② 당해 제조·수리공장에 투입되는 작업인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50	23번	보기	①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	①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68	22번	보기	③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)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	③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)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83	14번	보기	① 관세법 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(이하 “보세사 시험”이라 한다)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.	① 관세법 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 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(이하 “보세사 시험”이라 한다)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83	15번	보기	①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②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	①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②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49	36번	보기	④ ㄱ, ㄴ, ㄷ	④ ㄱ, ㄷ, 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56	3번	해설	<table><tr><th>내국물품</th><th>외국물품</th></tr><tr><td>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td>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</td></tr><tr><td>수출신고된 물품</td><td>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/tr><tr><td>-</td><td>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</td></tr><tr><td>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한 물품</td><td>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</td></tr><tr><td>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td>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</td></tr><tr><td>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</td><td>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/tr><tr><td>-</td><td>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</td></tr><tr><td>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</td><td>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물품</td></tr></table>	내국물품	외국물품	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	수출신고된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-	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	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한 물품	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	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	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-	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	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	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물품	<table><tr><th>내국물품</th><th>외국물품</th></tr><tr><td>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td>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</td></tr><tr><td>수출신고된 물품</td><td>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/tr><tr><td>-</td><td>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</td></tr><tr><td>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</td><td>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한 물품</td></tr><tr><td>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td>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</td></tr><tr><td>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</td><td>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</td></tr><tr><td>-</td><td>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</td></tr><tr><td>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</td><td>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물품</td></tr></table>	내국물품	외국물품	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	수출신고된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-	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	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	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한 물품	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	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-	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	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	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물품
			내국물품	외국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수출신고된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-	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한 물품	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	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국물품	외국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출신고된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	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	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	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	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59	9번	해설	상업서류는 물품의 명세 등이 기재된 <u>송품장</u> 과 운송서류(<u>선하증권</u> 또는 <u>항공화물운송장</u>) 이 된다.	상업서류는 물품의 명세 등이 기재된 <u>송품장</u> 과 운송서류(<u>선하증권</u> 또는 <u>항공화물운송장</u>) 가 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70	7번	보기	04	0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76	11번	해설	④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	④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(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81	8번	해설	ㄱ: 납세자보호담당관, ㄴ: 해당 세관장(본부세관장)이 해당된다.	ㄱ: 납세자보호담당관, ㄴ: 해당 세관장(본부세관장)이 해당된다. (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관세·법률·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			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이 해당된다)
384	4번	정답	②	⑤
388	8번	해설	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(현재는 내용이 개정되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)	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(현재는 내용이 개정되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)
389	16번	정답	③	②
391	3번	정답	②	③
391	3번	해설	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물품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들의 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	③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<u>물품이나 용역</u> 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된다.
393	5번	정답	⑤	③
393	5번	해설	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	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(10만원)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395	25번	정답	②	①
396	28번	정답	②	①
396	28번	해설	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	<u>물품검사방법</u> 이 해당되며, 물품검사장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396	29번	정답	④	②
396	32번	정답	②	①
398	2번	해설	「민법」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·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,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된다.	「민법」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<u>중앙관서</u> 등의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·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,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된다.
399	8번	해설	경창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한다.	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한다.
400	4번	정답	④	③
400	4번	해설	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	범죄물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매입하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403	2번	정답	②	③
403	2번	해설		화주의 주소 및 성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.

			3천만원 + 3천만원(3억원의 100분의 10)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(이하 "징수금액"이라 한다)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[2019년 기준] <table><tr><th>징수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<tr><td>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</td><td>100분의 15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<td>3천만원 +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</td></tr><tr><td>5억원 초과</td><td>6천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</td></tr></table> [현재 기준] <table><tr><th>징수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<tr><td>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</td><td>100분의 20</td></tr><tr><td>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</td><td>1억원 +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</td></tr><tr><td>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</td><td>3억2천5백만원 +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</td></tr><tr><td>30억원 초과</td><td>4억2천5백만원 +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</td></tr></table>	징수금액	지급률	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	100분의 15	2억원 초과 5억원 이하	3천만원 +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	5억원 초과	6천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	징수금액	지급률	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	100분의 20	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억원 +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	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3억2천5백만원 +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	30억원 초과	4억2천5백만원 +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	
징수금액	지급률																					
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	100분의 15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5억원 이하	3천만원 +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6천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																					
징수금액	지급률																					
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	100분의 20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억원 +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																					
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3억2천5백만원 +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	
30억원 초과	4억2천5백만원 +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																					
406	14번	해설	브루나이다루살림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브루나이 외교통상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.	브루나이다루살림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브루나이 외교통상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. (현재는 개정되어 재정경제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)																		
406	15번	정답	③	②																		
406	15번	해설	라오스는 한- 아세안 FTA 회원국 중 하나로서 기관발급방법을 적용한다. (라오스상공회의소) 에스토니아공화국 : 자율발급 (한-EU FTA) 스리랑카 : 협정국 아님 몰타 : 자율발급 (한-EU FTA) 동티모르 : 협정국 아님	① 스위스치즈 - <u>스위스연방농업국</u> 이 인증한 기관 ③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- 베트남 <u>산업무역부</u> ④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- 캄보디아 <u>상무부</u> ⑤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- <u>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</u>																		
407	20	정답	②	③																		
407	20	해설	미합중국과의 협정 : 발급일부터 4년(현재는 서명일부터 4년)	① 뉴질랜드와의 협정 - 서명일부터 <u>2년</u>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- 서명일부터 <u>4년</u> ④ 호주와의 협정 -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<u>2년</u> ⑤ 역내경제협정당사국과의 협정 -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<u>1년</u>																		
409	28	정답	①	③																		
409	28	해설	한-터키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·서명한 것으로 한다.	① <u>생산자</u> - 원가계산서·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② <u>생산자</u> -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④ <u>수입자</u> -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																		

				⑤ 수출자 -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
410	34	정답	①	⑤
410	34	해설	베트남 -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.	① 캄보디아 -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② 역내경제협정당사국 -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③ 이스라엘 -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④ 인도네시아 -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
412	50	정답	④	②
412	50	해설	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.	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④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⑤ 과실로 협정 및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423	24번	해설	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급특례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에 해당한다.	①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
426	44번	해설	과세가격은 거래가격(US\$ 150,000), 해상운임(US\$ 50,000) 및 보험료(US\$ 500)를 더한 US\$ 200,500이 된다.	과세가격은 거래가격(US\$ 150,000), 해상운임(US\$ 50,000) 및 보험료(US\$ 500)를 더한 US\$ 200,500이 된다.
436	11번	해설	당해 제조·수리공장에 투입되는 작업설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.	당해 제조·수리공장에 투입되는 작업인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
440	31번	정답	③	①
472	13번	해설	1.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: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4.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: 라오스 상공회의소	1.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: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4.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: 라오스 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부